

문재인 정권 전반기
소상공인
정책평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

2019년 11월 5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김규환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연 국회의원)

 여의도연구원 (이사장 황교안 당대표, 원장 김세연 국회의원)

프로그램

문재인 정권 전반기

소상공인정책평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

2019년 11월 5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10:05 국민의례

10:05~10:30 개회식

개회사
현장축사
내빈소개
기념촬영(내빈 및 패널)

10:30~11:10 주제발표

좌장 |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소상공인기본법 및 정책평가 발제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연구위원

소상공인으로 살아남기 현장의 목소리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종로구지회장 · 강계명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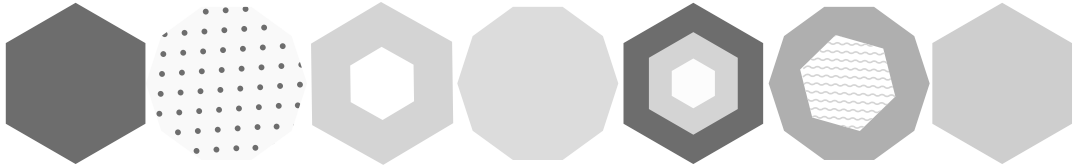
11:10~11:40 패널토론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노화봉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연구실 실장

11:40~11:50 질의응답

11:50~12:00 마무리 발언 및 폐회

목 차



개회사 김규환 국회의원	4
축사 이주영 국회부의장.....	6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8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10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12
발제 소상공인기본법 및 정책평가 발제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연구위원	15
소상공인으로 살아남기 현장의 목소리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종로구지회장	
강계명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회장	35
토론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41
권순중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45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51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59
노화봉 소상공인지원공단 정책연구실 실장	69
별첨 소상공인기본법안	77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김규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토론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현재 까지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기본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정부의 소상공인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이 등장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비 유통 트렌드가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와 양극화 심화의 주된 요인입니다.

한편 일본 수출 규제 및 불매운동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장기적인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현정부의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김규환

이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성장과 재기지원 진흥기금의 전체를 확대하는 방안 등의 문제를 토론회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지 않고선 근본적으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신속하게 정책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뒷받침하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소상공인의 고통이 커지지 않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5일
국회의원 김규환

축사

안녕하십니까? 이주영 국회부의장입니다.

국회에서 열리는「소상공인정책평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김규환 국회의원님,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매우 차갑습니다.

한 언론기사에 의하면 국민소득 3만 달러 기사에 화가 난다고 표시한 사람이 86.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 중 81%는 현재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현 정부는 최저임금과 주52시간 도입, 경제 불황 등 문제의 근본은 해결하지 못한 채 각종 정책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땀질 처방만 계속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깊은 한숨은 더욱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국회부의장 **이주영**

전국 6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자 우리 경제의 실핏줄입니다. 이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만큼 오늘 열리는 토론회는 그 어느 행사보다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오늘 토론회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소상공인 정책 문제를 현장의 목소리로 명확히 진단하고, 소상공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논의된 다양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이 적극 반영되고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부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5일
국회부의장 **이주영**

축 사

소상공인 정책을 평가하고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성 들여 토론회를 마련하신 김규환 의원님, 김명연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장님,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은 전국적으로 약 6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우리 경제활동인구가 약 2800만여 명임을 감안할 때,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네 명 중 한 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한 명의 소상공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들까지 고려하면 우리 경제에서 소상공인이 담당하는 역할과 기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등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현장을 다녀 보면, 적자가 쌓여 가는데도 달리 대안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고 있다고 토로하는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처럼 현장의 절규는 커져가고 있는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소상공인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덜어줄 개선 방안들은 여전히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 정권의 무관심과 무책임 때문입니다. 급기야 막다른 길에 내몰린 소상공인들께서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의 중심이자 우리 경제의 큰 축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황교안**

현 정권 정책들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대로 된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우리 당의 무엇보다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현재 우리 당이 추진 중인 중인 소상공인기본법을 비롯해 민생과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과 예산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들께서 웃으면서 더욱 힘내서 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황교안**

축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소상공인을 살리는 방법을 모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소상공인 정책평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김규환 의원님과 여의도연구원,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한국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현장과는 괴리가 있는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다들 버티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한국당이 경제를 살려야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308만개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있고, 종사자는 60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우리 경제와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정책은 중소기업의 일부로 인식될 뿐,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 살리기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련 법안과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김규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당 소상공인특위와 여의도연구원에서는 소상공인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저는 원내대표로서 우리 당이 소상공인 여러분과 더 많이 소통하고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의원실과 당 특위, 연구원이 합동으로 주최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살리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예산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소상공인정책 평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구 위원장입니다.

‘소상공인정책평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론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고하신 김규환 의원님과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여의도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얼어붙은 경기로 인해 장사도 안되는데 2년간 30%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문제 등으로 비용 부담만 증가하다보니 종사자를 포함한 700만 소상공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던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최저임금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맞춤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조차, 성격과 개념이 상이한 자영업자를 추가하자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상공인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내 전체 사업체의 85%, 전체 종사자의 37%가 소상공인입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 역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모쪼록 700만 소상공인들의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국민이 부자가 되는 나라, 자유한국당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발·제

소상공인기본법 및 정책평가 발제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연구위원

문재인 정권 전반기
소상공인정책평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방안 및 정책 평가

김종천 실장/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ontents

- I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소상공인 정책
- II | 발의된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주요 쟁점사항 비교 분석
- III | 바람직한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제언
- IV |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관련 정책 평가



1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소상공인 정책

- 가 기본법의 개념 및 체계
- 나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정책대상
확정 위한 사전적 논의



1.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소상공인 정책

가. 기본법의 개념 및 체계

- **(개념)** 제도 · 정책에 대한 기본이념이나 원칙 등 해당 분야의 방향성 제시 법률
 - 기본법에서 구현하려는 제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련 개별 법령을 제정하여 운영함
- **(체계)** 기본법의 성격이나 기능이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기본법의 제정 시 그 체계나 구성이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지, 이를 체계적으로 입법화하여 유관 법률 간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고려해야 함

1.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소상공인 정책

가. 기본법의 개념 및 체계

〈표〉 기본법의 구성 및 체계

장	조문제목	구체적인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기본법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 목표
	제2조(기본이념)	▪ 주로 법률 제정의 이념 또는 방침 강조
	제3조(정의)	▪ 주요 용어에 대한 뜻의 명확화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기본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 필요시 사업자 또는 국민의 책무 규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향후 제· 개정되는 다른 법률이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규정
제2장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제6조(○○기본계획)	▪ 시책의 종합적· 계획적 추진 목적
	제7조(○○시행계획)	▪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8조(○○위원회)	▪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등
제3장 ○○	정책의 구체적 내용	▪ 기본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정책의 주요 내용을 규정
제4장 보칙	제0조(보고· 검사)	▪ 정책의 주요 내용에 따라 필요한 보칙 사항 규정
	제0조(청문)	
	제0조(권한의 위임· 위탁)	
제5장 벌칙	제0조(벌칙)	▪ 구체적인 의무부과가 없는 경우 별도의 벌칙 규정 불필요
	제0조(과태료)	
부칙	제0조(시행일) 제0조(경과조치) 제0조(다른 법률의 개정)	▪ 제정의 경우 대체로 시행일만 규정하나, 경과조치나 다른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규정

5

1.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소상공인 정책

나.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정책대상 확정 위한 사전적 논의

1) 소상공인 기본법(안)의 발의 현황

- **(공통점)** 독자적인 소상공인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인식
- **(차이점)**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한다)과의 관계 정립, 정책대상의 범위 등

〈표〉 소상공인기본법(안) 발의 현황 비교

법률명	소상공인 기본법	소상공인 기본법	소상공인 기본법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소상공인 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발의 연월일	2018.07.09.	2019.01.29.	2019.01.30.	2019.03.29.	2019.07.11.	2019.10.30
발의자	김명연의원 대표발의	홍철호의원 대표발의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홍의락의원 대표발의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김규환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법과의 관계	폐 지	유 지	폐 지	유 지	유 지	유 지
기본법의 적용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간주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6

1.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소상공인 정책

나.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정책대상 확정 위한 사전적 논의

2) 현행법상 소상공인의 개념

- (소상공인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
→ “① 독립성 요건 + ② 규모 요건 + ③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요건” 충족 필요
- (유사개념과의 관계: 자영업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사용되는 개념(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 및 추이 파악)으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자**
* (자영업)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개인이 독립적으로 소유·운용하는 사업 활동
** (자영업자)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고용주와 자영자
- (유사개념과의 관계: 개인사업자) 국세청의 세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한 개념으로 개인사업자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혼동하는 개념
-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소득세, 부가세) 및 법인사업자(법인세, 부가세) 모두 포함
- 자영업자는 법인사업자 제외한 개인사업체를 의미
* 개인사업체: 사업자등록을 한 자(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7

2 발의된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주요 쟁점사항 비교 분석

가 | 범형식적 특징

나 | 법내용적 특징

2. 발의된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주요 쟁점사항 비교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가. 법형식적 특징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 **(필요성)**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립을 통한 상충 가능성 조정
- **(발의된 법률안 간의 비교)**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 (김명연/이연주/홍의락 의원안)
 -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 (홍철호/조배숙 의원안)
- **(소결)** 발의된 법률안 모두 소상공인기본법이 관련 개별법과의 사이에서 우월성이 있음을 명시
→ 두 규정을 함께 조문화 하는 것이 적함

9

2. 발의된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주요 쟁점사항 비교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가. 법형식적 특징

2) 현행 소상공인법의 존속 유무

- **(취지)** 소상공인기본법(안) 제정 시, 사실상 소상공인정책 분야의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행 소상공인법과의 관계 정립 선행 필요
- **(발의된 법률안 간의 비교)**
 - 소상공인법 폐지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방안(김명연/이연주의원안)
 - 소상공인법 유지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방안(홍철호/홍의락/조배숙/김규환의원안)
- **(소결)**
 - 소상공인법의 폐지 시, 기본법에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규율하게 됨으로써 기본법의 기능이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 발생
 -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은 소상공인 관련법 간의 관계를 연계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소상공인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 내포 →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시책을 구체화하는 소상공인법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10

2. 발의된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주요 쟁점사항 비교 분석

나. 법내용적 특징

1) 법률의 적용대상(용어 정의)

- (필요성) 법률을 적용·해석에 있어서 명확성 담보
- (발의된 법률안 간의 비교) 현행 소상공인법에 따른 소상공인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이언주/조배숙 의원안)
 - (김명연의원안)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규정 필요,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은 소기업 기준으로 이미 정해지는 것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평균매출액 기준을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면 무의미함
 - (홍철호의원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인용하지 않고 상시 근로자 수와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을 가지고 소상공인을 정의함
 - (홍의락의원안) 현행 소상공인의 용어 정의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이라는 요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를 정하는 대통령령에서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한다면 소상공인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11

2. 발의된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주요 쟁점사항 비교 분석

나. 법내용적 특징

- (소상공인 간주를 통한 지원대상의 확대 문제) 홍의락의원안은 기본법의 적용대상을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일부 자영업까지 포함 → “간주 소상공인”
 - 자영업자 중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들의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로 볼 수 있음
 - 다만,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 간주” 규정을 통해 소상공인정책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 ① 자영업에 대한 정의와 그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 ② 그간 기업정책으로 여겨졌던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과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③ 발의된 법률안 규정이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미흡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소결) 현행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 간주를 통한 정책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음*

* 만약 소상공인의 범위 확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개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김규환 의원(안)	- 소상공인 개념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등이 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

12

2. 발의된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주요 쟁점사항 비교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나. 법내용적 특징

2) 계획의 수립과 시행

- (필요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한 효율적, 체계적인 소상공인시책의 마련
- (발의된 법률안 간의 비교) 명칭은 상이하나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모두 포함
 - (계획수립주체) 기본계획의 수립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명연/홍철호/이언주/조배숙의원안/김규환의원안), 정부(홍의락의원안) →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 고려
 - (계획수립주기) 기본계획 5년(김명연/홍의락의원안), **3년**(홍철호/이언주/조배숙의원안/김규환의원안), 시행계획 매년 수립(모두 동일) →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과의 계획 간 연계성 고려

13

2. 발의된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주요 쟁점사항 비교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나. 법내용적 특징

- (계획수립절차)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김명연의원안은 제외)한 후 **국무회의에 보고** (홍철호의원안은 국회 보고도 추가)하는 방안(김명연의원안/홍철호의원안/홍의락의원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단독 수립 방안(이언주/조배숙의원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하여 수립(김규환 의원안) → 계획의 전문성 · 합리성 확보, 계획의 이행 독려 및 예산 확보 등 문제 고려
- (계획내용) 발의된 법률안에 **중첩되는 사항은 모두 포함**, 중첩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성이 있는 사항 추가**
- (자료 요청) 계획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 가능(김명연의원안 제외), 자료요청권의 행사범위는 상이 → 효과적 시책마련 고려 시 자료요청권 행사 대상은 넓게 규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홍철호/조배숙/김규환의원안)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이언주/홍의락의원안)

14

2. 발의된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주요 쟁점사항 비교 분석

나. 법내용적 특징

- (계획 평가) 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규정(이언주의원안 제외), 평가대상의 범위는 상이(김명연 의원안 및 홍철호의원안은 평가대상에 시행계획뿐만 아니라 기본계획도 포함),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의 평가결과를 반영한 연차보고서의 정기국회 개회 전 국회 제출 규정(모두 동일)** → 계획 평가 제도 실효성 고려를 고려해 그 대상은 시행계획으로 한정
- (시행계획) **매년 수립**, 그 주체와 절차는 상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김명연/홍철호/이언주/조배숙/김규환의원안)
 - 정부(홍의락의원안) : 정부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별 시행계획 수립
 -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김명연/홍철호/홍의락/김규환의원안)
 - **계획의 평가결과에 대한 다음 계획의 수립 시 반영**(홍철호/조배숙/김규환의원안)
- (지역계획) 시·도지사는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실적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 → 원활할 정책 실현 고려

15

2. 발의된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주요 쟁점사항 비교 분석

나. 법내용적 특징

3) 정책추진체계로서 위원회

- **(필요성)** 계획의 수립·시행과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역할 수행
- **(발의된 법률안 간의 비교)** 명칭은 상이하나 위원회의 설치를 모두 규정, 그 구성에 있어 일부 상이한 부분 존재
 - (위원회의 성격) **심의·조정 기능 수행**(김명연의원안 불명확)
 - (위원회의 소속) 국무총리(김명연의원안), **대통령**(홍철호/조배숙/김규환의원안), 중소벤처기업부(이언주/홍의락 의원안) →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역할이나 이들이 국내 경제질서에 있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위원회의 업무범위) 발의된 법률안은 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열거(김명연의원안 제외),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정
 -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소속에 따라 상이 → 다만, 위촉직 위원에 소상공인 단체 대표 포함, 공무원 아닌 위원이 위원의 전체 과반수 구성

16

2. 발의된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주요 쟁점사항 비교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나. 법내용적 특징

4) 소상공인 실태조사

- (필요성) 계획의 현실부합성과 실현가능성의 향상을 위하여 시행
- (발의된 법률안 간의 비교) 계획의 수립·시행에 참고 위해 실태조사의 실시근거 연계(모두 동일)
 - (실태조사의 실시주체 및 실시주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실시, 결과 공표 의무, 실시주기 1년 (발의된 법률안 공통)
 - (실태조사의 내용) 소상공인·자영업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 실태조사의 내용을 예시적으로 규정 (홍의락/김규환의원안), 실태조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적으로 규정(김명연/홍철호/이연주/조배숙의원안)
 - 실태조사 활용도 제고 위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열거

17

2. 발의된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주요 쟁점사항 비교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나. 법내용적 특징

- (실태조사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요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김명연의원안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만 미포함)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 → 조사결과 정확도 향상 위해 요청대상기관을 넓게 보는 것이 바람직*
 - * 소상공인 단체가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에게 개별적으로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요청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여부) 실태조사의 실시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탁 근거 규정(홍의락의원안 제외), 위탁가능 기관의 범위는 다소 상이 → 소상공인의 현황 및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 필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기관(김명연/이연주의원안)
 - 소상공인연합회(홍철호의원안)
 -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기관(조배숙/김규환의원안)

18

2. 발의된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주요 쟁점사항 비교 분석

나. 법내용적 특징

5) 사업수행기관

- (필요성) 행정기능의 복잡·다양화로 인한 수행 업무 분산 필요
 - 소상공인정책 관련 사업수행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존재, 해당 기관은 소상공인정책 전반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소상공인기본법(안)에 기관의 설립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발의된 법률안 간의 비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본법에 설립근거 규정(김명연/홍철호/이연주의원안), 소상공인법에 규정(홍의락/조배숙/김규환의원안)
 - 공단은 소상공인법에 따른 업무뿐만 아니라 소공인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정책 전반에 관여

19

2. 발의된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주요 쟁점사항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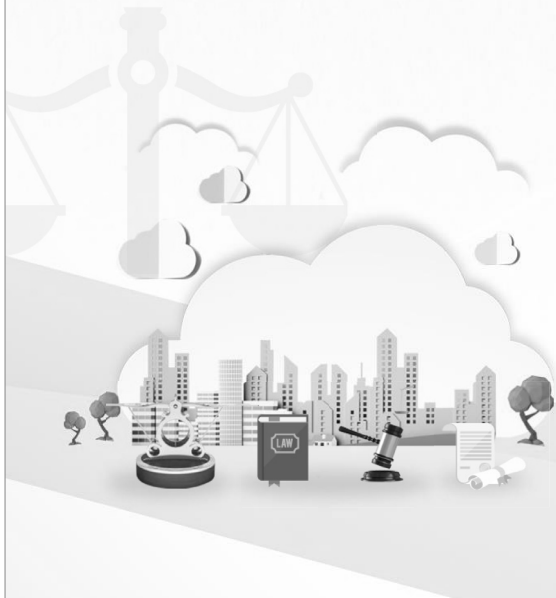
나. 법내용적 특징

- (발의된 법률안 간의 비교: 소상공인연합회) 기본법에 설립근거 규정(김명연/홍철호/이연주의원안), 소상공인법에 규정(홍의락/조배숙/김규환의원안)
 - (설립요건)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 조합 및 단체(김명연/이연주의원안), 회원 중 소상공인의 비중은 60% 이상으로 낮춤(홍철호의원안) →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의 단체 등이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소상공인의 권익 대변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회원 중 소상공인의 비중은 현행 90%에서 60~70% 정도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함
 - (설립절차) “... 요건을 갖춘 자는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받기만 하면 여러 개의 연합회가 설립될 수 있는 구조 → 이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여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연합회의 설립 취지와 다른 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연합회 설립허가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홍철호의원안)

20

3 바람직한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제언

- 가 | 소상공인 관련 시책의 조문화 방안
- 나 | 소상공인 지원 시책
- 다 | 소상공인기본법(안) 제정 관련 제언



3. 바람직한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제언

가. 소상공인 관련 시책의 조문화 방안법내용적 특징

1) 발의된 법률안 간의 비교

- **(사업영역의 지정/보호)** 사업영역의 지정/보호 시책 마련 규정(이언주의원안 제외), 실시주체는 정부로 규정(홍의락의원안 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 포함)
-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 정부의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은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규정 유지 바람직
 - 소상공인법의 규정 차용(김명연/이언주의원안), 별도 규정 없음(홍철호의원안), 직접 지원 아닌 시책 실시 혹은 시책 마련(홍의락/조배숙의원안)
-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은 소상공인법 제12조의3 규정 유지 바람직
 - 소상공인법과 동일하게 규정(김명연/이언주/조배숙의원안)

3. 바람직한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제언

가. 소상공인 관련 시책의 조문화 방안내용적 특징

- (사회보장/사회안전망) 사회보장 또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하여는 관련 시책의 수립·실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김명연/홍의락/조배숙의원안)
 - 기본법의 체계상 조문화 방식은 필요한 시책을 열거하는 홍철호의원안 적합
-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다른 기업 간의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혹은 상생협력에 필요한 시책 실시 규정(김명연/홍의락/조배숙의원안)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상공인법 제15조 규정 유지 바람직

23

3. 바람직한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제언

가. 소상공인 관련 시책의 조문화 방안내용적 특징

2) 기본법상 소상공인 보호 시책의 조문화 방안

- 소상공인법을 폐지하지 않고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소상공인정책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제정될 소상공인 관련 법률이 소상공인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소상공인정책이 마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 시책의 조문화에 있어서도 사업 등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책의 실시 근거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소상공인기본법(안)이 기본법으로서 현행 및 향후 제정될 소상공인 관련 법률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며, 발의된 법률안의 소상공인 보호 시책 중에서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 고용보험료의 지원,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은 지원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소상공인법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함
- 사업영역의 지정, 사회보장 혹은 사회안전망의 확충, 공정경쟁 혹은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은 기본법에서 다루어야 할 시책의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상공인기본법(안)에 시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되, 기본법과 개별법 간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개개의 시책을 조문화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아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24

3. 바람직한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제언



나. 소상공인 지원 시책

1) 발의된 법률안 간의 비교

- **(창업)** 단순 창업 지원 근거(김명연의원안), 창업 지원(촉진)에 필요한 시책 실시 근거(홍의락/조배숙/김규환의원안), 창업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근거(이연주의원안)
 - 홍철호의원안은 소상공인의 체계적 지원에 관한 시책의 실시로 규정하여 창업 지원 시책이 포괄적 지원 시책에 내포
- **(경영안정)**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 지원 사업의 근거(이연주의원안), 경영정상화/경영안정에 관한 시책 실시 근거(홍의락/조배숙의원안), 사업장 환경개선 시책(김규환의원안) 환경규정 없음(김명연/홍철호의원안)
- **(인력확보)** 인력 확보 지원에 관한 시책 마련을 직접적 규정(홍의락/조배숙/김규환 의원안, 조배숙의원안은 “복지수준의 향상”을 시책에 추가적으로 포함)
- **(판로)** 판로 지원에 관한 시책 마련을 직접적 규정(홍의락/조배숙/김규환의원안)

25

3. 바람직한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제언



나. 소상공인 지원 시책

- **(국제화 촉진 및 디지털화)**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화에 관한 사항과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지털화 지원에 관한 시책의 실시 근거(홍의락/조배숙/김규환의원안)
- **(구조고도화)** 구조고도화 지원 시책의 실시 근거(김명연/홍의락/조배숙/김규환의원안), 구조고도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근거(이연주의원안), 규정 없음(홍철호의원안)
- **(자주적 성장 역량 강화)** 소상공인의 자주적 성장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의 실시 근거(김명연/홍철호/조배숙 의원안)
- **(폐업)** 폐업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실시 근거(김명연/홍의락/조배숙/김규환의원안), 폐업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근거(이연주의원안), 규정 없음(홍철호의원안, 소상공인 체계적 지원 시책 안에 폐업 포함)
- **(공제제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의 시책 실시에 관한 근거(홍의락의원안 제외)
 - 홍철호의원안은 공제사업 시책 실시 근거 규정, 시책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김규환의원안은 소상공인이 폐업, 사업 전환, 노령화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제도를 마련
- **(조세 감면)** 소상공인의 육성/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김명연/이연주/조배숙/김규환의원안)

26

3. 바람직한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제언

나. 소상공인 지원 시책

2) 기본법상 소상공인 보호 시책의 조문화 방안

- 소상공인법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이 법체계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소상공인 지원 시책도 구체적인 사업 근거의 규정이 아닌 시책의 실시 근거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발의된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시책은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 시책을 구체적이면서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 특히 소상공인법이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안정, 구조고도화,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인 사업지원의 근거로 규정한 반면, 발의된 기본법(안)에서는 주로 시책의 실시 근거를 두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인력확보, 판로, 국제화 촉진 및 디지털화도 사실상 현행 소상공인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원 사업의 형태를 기본법(안)에 추상적으로 규정하는데 그친 것으로 **홍철호의원안에 따른 “소상공인의 체계적 지원” 시책 안에 모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은 시책의 실시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조배숙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통합지원단, 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의 실시와 관련된 기본적 사항으로 소상공인기본법(안)에 추가적으로 포함 필요**

27

3. 바람직한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제언

다. 소상공인기본법(안) 제정 관련 제언

-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제정 논의는 2018년 7월 8일 김명연의원 대표발의로 소상공인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안된 후, 기본법의 제정 논의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 관련 개별법의 제정 움직임과 既 제정된 소상공인 관련법의 개정에 대한 움직임으로 이어짐
- 이러한 동향은 **소상공인 정책도 독자적인 정책분야로서 해당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은 소상공인정책의 독자성 확보, 경제주체로서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구축, 소상공인 관련 법체계 정립**이라는 제정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법률안은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사항을 규율하게 되거나 그 실질이 모호해지거나, 소상공인기본법과 관계법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체계적인 소상공인정책의 실현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 가능
- 소상공인기본법은 **현행 소상공인법을 유지한 채 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며, 소상공인기본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도 구체적·세부적인 소상공인정책이 아닌 소상공인정책의 방향, 추진체계, 기본적인 시책의 실시 근거, 소상공인 관련 개별법 혹은 개별 규정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담는 것이 바람직함

28



4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관련 정책 평가

- 가 소상공인 온라인 광고 관련 지원제도 검토
- 나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 다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확대 및 교육강화 필요
- 라 소상공인 기업센터 설립 방안
- 마 소상공인 카드 의무수납제 및 수수료 단체 협상권 개선 필요
- 바 소상공인의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 마련 필요

4.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관련 정책 평가

가. 소상공인 온라인 광고 관련 지원제도 검토

- 소비자 행태 변화에 따라 포털 등 온라인 광고 의존도 상승
 - * 포털광고 (58.9%) > 전단지·옥외광고(27.2%) > 블로그·SNS 광고(11.7%)
 - ** 월 평균 광고비는 39.5만원, 포털광고는 평균 28만원 지출
- 포털 광고를 이용한 소상공인의 17.0%가 불공정거래를 경험
 - 불공정거래의 대다수는 '광고비 과다'(60%)를 차지
 - * 출처: 소상공인 포털광고 및 O2O서비스 이용현황 조사('18.6~7월)
- 온라인 광고비 증가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
- 이에 따라 포털기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에 관한 제도 검토 필요함

4.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관련 정책 평가

나.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 소상공인진흥기금으로 최근 5년간 약 10조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창업위주의 정책이 다수로 성장과 사회안전망 정책 미미

〈참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18년	'19년	증감액(%)
창업지원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	171	141	△30 (△17.5)
성장지원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885	1,098	213 (24.0)
사회안전망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147	440	293 (199)

※ '19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 : 약 2.6조원(총지출 기준)

- 창업위주의 소상공인 정책에서 성장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필요
- 정부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재기지원사업 및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 전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 폐업소상공인 재기교육 · 컨설팅 · 전직장려수당('18. 95억 → '19. 336억), 재창업교육 · 멘토링('18. 40억 → '19. 75억), 고용보험료 지원('18. 12억 → '19. 29억)
- 정부도 소상공인에 대한 4대 보험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예: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31

4.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관련 정책 평가

다.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확대 및 교육강화 필요

- 경영환경 변화*가 소상공인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상공인은 규모나 역량에 한계가 있어 협업 필요성 대두
 - * 소상공인 과당경쟁, 인건비 상승, IT · 온라인 등의 정보화, 금리상승 등
- '13년부터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전국 · 지역 조직화가 초기단계 수준으로 미흡
 - * 조합설립(누계, 개) : ('13) 599 → ('15) 1,451 → ('17) 2,055 → ('18) 2,175
- 소상공인의 협업화 및 조직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사업, 교육 · 컨설팅, 판로지원 등 협업사업 확대 필요

32

4.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관련 정책 평가

라. 소상공인 기업센터 설립 방안

- (센터 설립지원 관련 유사사례) 중기중앙회 소유 건물(여의도 사옥, 용인 연수원, 상암동 DMC타워) 건립비는 민간 기부 형태로 건립
 - 여성경제인협회의 경우 지역센터(17개소) 건립비 지원 중('08~'19년 122억원)
 - * 재원마련 : 국비(50%) - 지방비(50%) 매칭
- (소상공인 기업센터 설립) 소상공인 관련 정보를 집적하여 정보·교육·연구 기능을 제공하고 각종 회의실 및 컨벤션, 강의실, 세미나실 등 설치 및 소상공인 빅데이터 센터 설치 필요

33

4.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관련 정책 평가

마. 소상공인 카드 의무수납제 및 수수료 단체 협상권 개선 필요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30억원)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하였으나, 의무수납제도는 여전히 존재
 - * 의무수납제도에 의해 신용카드 거래시 발생한 수수료를 모두 가맹점이 부담
-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지만, 일반가맹점은 협상권이 없어 높은 수수료 적용*
 - * 일반가맹점(평균 2.1%)과 대형가맹점(약 1.8~2.0% 수준)
- 이에 정부도 가맹점의 소액 카드결제 거부 등 의무수납제 완화에 대한 소비자와 가맹점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하여 우대 수수료 구간을 확대하여 일반 가맹점 대상으로 대폭 확대함
- 정부도 지속적으로 일반가맹점 협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 마련

34

4.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관련 정책 평가

바. 소상공인의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자 방안 마련 필요

- 최근 도심의 골목상권 등은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
 - * 서울 홍대, 경리단길, 신촌, 가로수길, 대학로 등으로 점차 확대되는 상황
-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로 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 및 안정적 영업 환경 조성 저해
- 최근 정부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상권내몰림 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였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서 “지역상생발전구역의 지정제”를 논의 중임
 - *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5년→10년, '18.10월),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 '18.1월), 상가 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의 점진적 폐지 추진(현행 90% 수준 → ('19) 95%)
- 일부 지자체나 내공사 등에서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영업을 보장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는 “공공임대상가”를 운영 중에 있으므로 공공임대상가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 구역지정에 관한 조례 등

35

감사합니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발·제

소상공인으로 살아남기 현장의 목소리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종로구지회장
강계명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회장

문재인 정권 전반기
소상공인정책평가
를
위한 정책 토론회



MEMO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Ruled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토·론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문재인 정권 전반기
소상공인정책평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소상공인기본법의 재정 방안 및 정책 평가에 대한 토론

신 민수

(한양대학교)

- 발표자의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취지와 구조 및 각 항에 대한 사항에 대부분 동의함
- 다만, 기본법 제정 시에 기본법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중 특히 아래의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본법의 규정내용이 기존의 시책을 옹호하고 고정화할 수 있다는 점
 - 규정내용이 선언적·훈시적이기 때문에 법규개념과 상응하지 않는다는 점
- 그러나 기본법이 규정된 정책방향 설정이나 원칙 규정 등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조항의 효력은 공동체를 위하여 중요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 관념을 확인하는 데 그 본질이 있음
- 또한 해당 법률의 정당화 및 통합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규범적 내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점에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소상공인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본법에서 산업 고도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범주 변화를 포섭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요건과 중소기업자단체 중 일정조건(소상공인 비중, 소상공인 수)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개념을 설정하고 소상공인법에서는 기본법에서의 취지에 따라 관련 보호 및 지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정책 거버넌스의 명확한 관계 규정이 수립이 되어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으므로, 계획 수립 절차에 있어 전문성과 이행 책임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정책 추진 체계에서 있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사전적 심의 조정 기능이 있는 것인지, 사후적 이행 사항 및 문제 발생에 따른 조정 기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양 측면에서 구성되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정책 실행의 효과를 위해 실태 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 3의 기관/단체에서 객관적인 실태 조사 항목과 수집 방법 등을 제시 및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명하는 규정에 관하여는 별칙의 필요성의 유무에 대해 검토를 요함으로, 객관성의 담보를 위하여 기본법을 입안하는데 있어서는 별칙의 요부를 신중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업종은 독점적 경쟁시장* 속하는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낮은 비용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자를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할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이 제한되고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가능하고, 사업 등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규정하는 경우 경영 개선이 가능하나, 이윤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진입으로 진입 규제의 혜택이 사라질 수 있어 소상공인 시장의 축소도 가능함
 - 따라서 직접적인 근거를 규정하지는 않으나, 소상공인의 경영 범위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 범주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수립과 과도한 업종 확대에 의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 요건을 규정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완전경쟁과 독점의 중간형태인 시장 형태로서 좁은 의미로는 상호간에 대체성이 높은 동종이질 제품의 공급자가 다수인 시장 형태로 독점적 요소와 경쟁적 요소가 공존하는 시장형태로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고 대체성이 높지만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하는 시장

토·론

권순중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문재인 정권 전반기
소상공인정책평가
를
위한 정책 토론회

소상공인 정책방향과 관련법제에 관한 제언

- 소상공인연합회 -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과 대책

■ 소상공인업계의 경영환경악화와 영업수지침체 원인을 경기침체(recession)요인, 정책적 요인, 소상공인과밀구조적 요인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첫째 경기침체요인은 내수경기에 특히 민감하고 대부분 서비스업종에 치중되어 있는 소상공인업계가 제조업 중심의 일반 중소기업계에 비해 더 크게 작용하여 상대적 어려움이 심각함

둘째 정책적 요인은 정부의 친노동정책에 따라 최저임금 등 고용비용의 인상 정책을 전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해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업계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필수 고용인조차 감당할 수 없어 해고하게 되는 등 영업가동률 자체가 감소하는 악순환에 놓이게 됨

셋째 구조적요인은 낮은 진입장벽과 불안정한 고용시장으로 인해 준비 안 된 창업의 과다현상으로 이미 과밀해진 소상공인업계의 구조화된 허약한 경쟁력으로 내몰림

이러한 진단이 유의미하다면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경기침체요인, 정책적 요인, 구조적요인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차별하여 상호 시너지가 나오도록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함

첫째 경기침체요인의 해소를 위해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둘째 정책적 요인의 조정을 위해 5인 미만 취약 소상공인 사업장의 최저임금을 규모별 차등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절실하며, 셋째 구조적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상권에 따라 경쟁력 분석을 주기적으로 하여 종합적인 상권영향 평가를 통해 지역별 과밀업종을 분산시키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교육과 경영혁신 동기화가 필요함

■ 기존의 현장애로중심의 방어적 지원정책을 혁신하고 성장하는 소상공인 육성·지원의 적극적 지원정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함

〈업종별 규제완화 및 지원 정책〉과 〈소상공인 정책체계 혁신〉을 통해 〈상권 보호 및 상생협력〉과 〈사회안전망 및 복지확대〉의 기반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까지 마련된 정부의 소상공인 핵심과제

-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
-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거점으로 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 전통시장 등 주요 상권 주차장 확보
- 제로페이 확산
- 부실채권 0.9조원 조기 정리 지원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의 개선
-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및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신설

■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향후 방향

- 협업활성화 : 창업벤처·기업 수준의 지원 필요
- 혁신활동강화 : 특화R&D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필요
- 공정거래확립 : 분쟁조사 및 조정권 부여 등을 통해 가맹점 출점제한 등 해결
- 사회안전망 구축 : 취약 소상공인 및 근로자의 사회복지시스템 공동구축필요
- 상권중심 지원체계 : 상권 주기 및 패턴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관련법제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관련

소상공인을 독립 산업의 한 분야로서 업종별·특성별 최적 지원 및 육성을 할 시대적 필요성과 효율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을 포함하는 기본법 제정이 절실

가. 소상공인기본법의 기본원칙

- 기본법의 근본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그 명칭도 〈소상공인기본법〉으로 정통성있게 명명되어야 함
- 기본법의 제정과 동시에 관계 개별법들도 신속히 개선되어야 실효성이 있음
- 기본법의 성격상 제정 후에도 사문화되지 않도록 소상공인정책이 기본법에 충실하게 계획 시행되도록 견인되어야 함

나. 소상공인기본법에 꼭 담겨야 할 핵심조항

-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독립지위 선언
- 소상공인의 용어 정의
- 소상공인 권리조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시책 의무조항
- 소상공인의 안정된 상가운영을 위한 <공간디자인>계획조항
- 소상공인연합회의 법적지위 보장조항
- 소상공인정책위원회 및 소상공인 기금조성·운용조항

■ 최저임금법 개정관련

가. 현행 최저임금법의 문제

- 현행 단일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업종, 지역, 기업규모 간의 다양한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과 적용으로 인해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률의 편차가 40%p에 육박할 만큼 심각한 상황임

나. 개정 방향

현행 단일 최저임금을 고용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5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규모별 구분적용 규정을 신설하여야 함

■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특별법 개정관련

가. 법의 제정 목적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함

나. 개정 방향

법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실질적으로 영세소상공인 업종을 중심으로 되도록 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관련

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이마트 노브랜드 같은 재벌유통업체의 소매점들이 골목상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나. 개정 방향

- 초대형복합쇼핑몰, 이마트 노브랜드 같은 편법 ssm 등을 유통산업발전법 대상으로 적용하고, 현행법상 실효성에 문제가 있던 사항들을 개정하여 우리나라 유통산업에 건전한 생태계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의 등록 이전 단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적절한 규제에 한계가 있음
대규모점포는 지역 전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도시 계획 단계,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상권영향평가서를 전문기관에서 작성토록 하고, 소상공인들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제출기한도 건축허가 이전으로 규정해야 상권영향평가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현행 제도는 전통상업보존구역만 아니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더욱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토·론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문재인 정권 전반기
소상공인정책평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

[토론문]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기본 법률안 마련을 기대하며

권오현¹⁾

변호사

1. 서

「소상공인기본법안」(이하 ‘기본법안’이라 합니다)은 소상공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나아갈 방향과 소상공인의 성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등 시의 적절한 법률 제정이라고 보여지며, 위 제정법률안에 대해 발제자께서 제정안에 대한 체계와 주요 쟁점 사안들에 대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만 실효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부분도 향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소상공인’ 적용 범위 기준 마련과 관련하여

기본법안 제2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에 대해 정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에서, 인원수를 10명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고, 업종별로는 향후 제정될 대통령령에 따라 기준을 정할 것을 예정하면서 소상공인이 규모 확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3년간 한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

1) (現)법무법인(유한) 해송 변호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아래와 같이, 업종에 따라 규모기준을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 80억원 / 50억원 / 30억원 / 10억원 이하의 기준으로 '소기업(小企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이하 생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별표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그런데 기본법안이 전제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최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 등으로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업자들로서,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i)이들에 비해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 80억원 / 50억원 / 30억원 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으로서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ii)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등에서 전제하지 않는 신규 업종에 종사하게되는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으로 분류조차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iii)기본법안 제2조 제3항에서는, “그 규모 확대등으로 소상공인으로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매출이 감소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사업규모로 축소되는 중소기업 사업자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도 마련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iv)또한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이미 ‘소상공인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판단기준을 고려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소상공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기본법안 제7조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보호 및 성장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제들 중에는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국가·지자체와 겪게 되는 이해 충돌, 소상공인 상인들간

에 겪게 되는 이해관계 충돌, 주변 민원인들간에 겪게 되는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서도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주제도 보완하는 것으로 고민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4. ‘소상공인정책심의회’설치와 관련하여

기본법안 제9조에서는 대통령 소속하의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고 있으며, 심의회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보호 및 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등에 대한 ‘컨트론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상공인 및 경제·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두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등을 위해 각종 추진하는 사업이 위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내용과 상당부분 중복될 수 있고, 효율성 및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현재 이들 소상공인 지원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인력들의 의사가 최대한 소상공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심의회 운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문재인 정권 전반기
소상공인정책평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및 소상공인정책 방향

조재연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

I.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1. 제정배경 및 목적

가. 제정 배경

- 소상공인은 2017년 기준 313.8만개 사업체에서 620.2만명이 종사하여 우리 경제에 큰 비중을 담당
 - 전산업 대비 사업체기준 78.1%, 종사자기준 28.7%를 차지
 - 소상공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8개의 법률이 시행 중
 - 소상공인을 ‘작은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거나 경제적 약자로서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시행되고 있음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 최근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은 경제, 기술, 소비 등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큰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환경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또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정책적으로도 소상공인분야 직업의식 고취, 신기술 활용 및 내실화를 통한 안정성 확보, 지자체 중심의 지역상권 정책 강화, 체계적인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마련 등이 요구되는 시점
 -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보다 근원적,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증가
 - 경제적·사회적 약자로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한편, 혁신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포괄적인 소상공인 법체계 요구

나. 제정 목적

- 급변하는 소상공인 영업환경에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 마련
-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관련 여러 법률들과 정책들을 아우를 수 있는 소상공인의 기본법 마련

2. 현실태 및 재정여건

가. 소상공인정책 대상

- 2019년 현재 소상공인 정책은 대상 측면에서 **소상공인 전체, 제조업, 유통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기업마당 기준)
 -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 중기부·산업부·금융위 등
 - 업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소상공인정책자금 등
 - 제조업 소상공인(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 중기부
 -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 지원,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 홈쇼핑입점지원 등
 - 유통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 중기부
 - 소상공인 상품보완 및 컨설팅 지원, 중소슈퍼 협업화 지원사업, 나들가게 육성 등
 - 소상공인 대상 기타 정책 :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해수부 등
 - 자영업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지원, 농산물 도매시장 자금, 청년상인도약지원사업, 대규모점포 영업제한, 공영홈쇼핑을 통한 수산상품 판매 등

나. 정책변화 및 관련 법체계

- 소상공인 정책 혹은 소상공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외환위기 시작된 **정책**

초기에 비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짐

- 정책초기 : 외환위기 직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초기정책은 창업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둠
- 성장기 : 소상공인의 경쟁력제고, 경영안정이라는 경제적 키워드로 정책이 집행
- 최근 : 소상공인을 둘러싼 문제가 대형마트·SSM·복합쇼핑몰 등 대기업과의 갈등과 보호, 과당경쟁 완화, 사회안전망 확대, 금융을 포함한 서민 문제 해결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정책 또한 점차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

□ 소상공인 관련 법체계 : 특정 목적으로 제정·시행 중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② 중소기업기본법 : 소상공인 범위 포함

- 중소기업이 나아가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

③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 소상공인 보호

-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④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조업 소상공인 지원

-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집적 소상공인 지원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⑥ 유통산업발전법 : 유통업 소상공인 보호
 -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 ⑦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소상공인 보호
 -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
- ⑧ 협동조합기본법 :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다. 최근 정부의 노력

- 최근의 소상공인 정책과 사업들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적문제로 접근하는 추세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18.8) :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제로페이 조기 도입 및 활용도 제고, 각종 공제한도 인상,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지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단기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 복지향상에 초점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8.12) : 생애주기별 성장환경 조성, 자영업 성장역량 제고,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 준비된 창업유도, 원활한 재기 및 퇴로 지원 등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19.9) :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상권활력 제고,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안전망 강화 등 자생력 마련에 초점

라. 정책환경 대응의 한계

- 현행 법률들은 현재 요구되는 소상공인 정책환경에 대응하는데 한계
 - 세부적인 특정 목적으로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내용, 지원수준 보다는 법의 포괄성 및 지원체계에서 나타나는 한계

- 다양한 부처,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관련 시책들을 체계적으로 아우르기 어려움

3.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필요성

□ 기본법의 의의 측면에서의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필요성

- 기본법의 역할인 정책방향 제시 측면, 제도 및 정책의 체계화·종합화 측면, 국민에 대한 정책 전달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높음

□ 경제적·사회적 위상 측면에서의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필요성

-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장 내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성과는 매우 낮은 수준

*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체당 매출액 2억원(제조업 43억, 서비스업 25억), 종사자수 2명(16명), 소상공인 사업체비중 78.1%, 종사자비중 28.7%(사업체조사, 소상공인(시험)/중소기업실태조사)

- 소상공인은 법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나 경제적 측면에서 질적·양적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볼 수 있어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서 법적지위를 부여할 필요

□ 산재되어 있는 소상공인 관련 법률·정책들의 총괄기능 법률 필요

- 중기부, 산업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에서 소상공인 관련 법률 운영 중
- 개별 법률들과 함께 고용부, 금융위, 문체부, 지자체 등 다양한 부처에서 시행 중인 정책들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근거 마련 필요

*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신·기보 보증 자금지원, 공예·한류문화 확산, 지역상품권 등

□ 육성과 보호 지원시책, 지원기반의 체계성·확장성 마련 필요

- 현행법에서 미흡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 공정한 시장위한 거래질서 확립,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 연구 및 규제개선기관 등 체계성 확충

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상태라면 시책의 대상이 될 것임

II. 소상공인정책 방향

1. 소상공인 성장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 음식업, 도·소매업 등 생계형 창업은 억제하고 소상공인 혁신성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18.12월)
 - * (준비된 창업유도)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개편, 튼튼창업프로그램 등 (성장환경 조성) 상권르네상스,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전국 물류정보 통합 연계망 구축 등 (정책체계 혁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전문 부설연구기관 설립, 통계 기반 구축 등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재기지원사업 및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연구용역 추진 중
-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원활한 퇴로 확보 및 재기 등을 위하여 소진기금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대하도록 노력

2.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 온라인상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방지방안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
 - * (관련 개정안)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1.31) : 중개 수수료 산정 기준 규정 및 영세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우대수수료를 적용 의무화 ②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보호법」('18.11.22) : 포털·오픈마켓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도입

- 이와 함께 마케팅정보 활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포털과 소상공인간의 상생·협력* 유도

* 예) 마케팅, 트렌드분석 등 광고주 정기 교육프로그램 ‘배민아카데미’ 운영(배달의 민족)

3. 소상공인 전담부서 확대

- 600만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의 조직 및 인력 확충 필요
- 현재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조직 확대를 위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행안부와 협의 중
-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조직 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 중

4.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확대

- 소상공인의 협업 및 조직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사업, 교육·컨설팅, 판로지원 등 협업사업 확대
 - * 협업사업 지원 실적 : ('18) 592개 → ('19) 600개 → ('20) 650개
 - 조합의 규모·역량에 따라 유형별(일반, 선도, 체인형)로 공동사업을 차등 지원하여 규모화 촉진(조합원 20인 이상 협동조합: '18, 30 → '22, 150개)
 - * 마케팅, 브랜드개발, 네트워크 구축, 프랜차이즈시스템 등 공동사업 지원
 - 온라인(소셜커머스, 토막광고 등), 오프라인(박람회, 지역판매전, 전문전시회 등) 판로지원을 확대하여 조합 매출증대 및 제품홍보 강화
- 협업교육·컨설팅을 통한 인식개선과 경영역량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협업 아카데미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 ('18, 전국 6곳 → '19, 8곳 → '22, 17곳)

5. 빅데이터에 기반한 상권분석 정보 제공

- 현재 30종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상권분석 정보를 상권정보시스템

(sg.sbiz.or.kr)을 통해 제공 중

- 일부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 통해 일반에 공개 중
- * 상가업소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중 이용 신청건수 기준으로 7위 차지('18년 기준)
- 공개 데이터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
- * (기존)상가업소 및 주요상권영역 정보 → (추가) 상가업소 업력(개·폐업이력 등), 전통시장 DB
- 다양한 빅데이터를 구축·분석하여 상권·소비패턴 분석, 마케팅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

토·론

노화봉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연구실 실장

문재인 정권 전반기

소상공인정책평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정책평가 토론회

노 화 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 발제를 해 주신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종천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 (1)소상공인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2)정책평가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간주소상공인(자영업자), 소상공인 실태조사 사업수행기관, 연합회 설립 절차 등
 - ⇒ 소상공인 온라인 광고 지원제도, 소상공인 기업센터 설립, 소상공인 카드 의무수납제 및 수수료 단체 협상권 등
-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실무자/연구자/개인의 관점에서 이야기 하고자 함
-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논의는 ‘18.7.9,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로 소상공인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안되면서 시작됨
 - * 현재의 정부 대체법안과 김규환 의원 발의내용을 일부 포함하는 (안)도 검토
- 소상공인정책도 독자적인 정책분야로서 해당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임
-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은 소상공인정책의 독자성 확보, 소상공인의 혁신과 경제주체로서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및 성장기반 구축, 소상공인법 체계 정립이라는 제정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표〉 소상공인기본법안 발의 현황

구분	법안명	발의연월일	대표발의	의안번호	비고
1	소상공인기본법안	‘19.10.29	김규환(15인)	2023192	자유한국당
2	소상공인기본법안	‘19.7.11	조배숙(16인)	21436	민주평화당
3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안	‘19.3.29	홍의락(14인)	19470	더불어민주당
4	소상공인기본법안	‘19.1.30	이연주(10인)	18412	무소속
5	소상공인기본법안	‘19.1.29	홍철호(10인)	18379	자유한국당
6	소상공인기본법안	‘18.7.9	김명연(18인)	14293	자유한국당

- 기본적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법률은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사항을 규율하게 되거나 그 실질이 모호해지거나, 기본법과 관계법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계적인 소상공인정책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
- 소상공인기본법은 현재의 소상공인법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본법 제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도 구체적, 세부적인 소상공인정책이 아닌 소상공인정책의 방향, 추진체계, 기본적인 시책의 실시 근거, 소상공인 관련 개별법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담는 것이 바람직
- 현재 정부가 김명연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법안을 가지고 국회 등에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대체법안은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염두 해 두고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필요하다면, 김규환 의원의 대표발의안도 함께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발의된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가. 소상공인 간주를 통한 지원대상 확대 문제

- 기본법의 적용대상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부 자영업까지 포함
 - 이는 자영업자 중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들의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 간주 규정을 통해 소상공인정책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자영업에 대한 정의와 그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그간 기업정책으로 여겨졌던 소상공인정책의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발의된 법률안 규정이 명확성을 잃게 된다는 점 등 한계가 있어 보임
 - 현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 간주를 통한 정책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적 조치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나. 소상공인 실태조사 업무위탁 여부 문제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한 효율적, 체계적인 소상공인시책 마련을 위해 필요
 - 계획의 현실부합성과 실현가능성의 향상을 위해 시행
 - 그러나 실태조사 실시주체는 중기부장관이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탁 근거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가능 기관의 범위는 다소 상이함
 - 소상공인의 현황 및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기관으로의 규정이 필요한데, 이는 마땅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포함된 규정이 되어야 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정책 관련 사업수행기관으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

다. 기본법에 소상공인 연합회 설립 근거 규정

- 소상공인 연합회 설립에 대한 요건과 절차의 근거 규정은 기본법(김명연/홍철호/이연주 의원안)과 소상공인법(홍의락/조배숙/김규환 의원안)에 규정
 - (설립요건)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의 단체 등이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원 중 소상공인 비중은 높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봄
⇒ 가급적,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에 해당 必
 - (설립절차) 중기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받기만 하면 여러 개의 연합회가 설립되도록 해야 함(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여 소상공인 스스로 권익을 대변하는 구조가 바람직)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관련 정책평가)

- 소상공인 온라인 광고 관련 지원제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확대 및 교육 강화, 소상공인 기업센터 설립, 소상공인 카드 의무

수납제 및 수수료 단체 협상권 개선, 소상공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 (소상공인 온라인 광고) 소비행태 변화에 따라 포털 등 온라인 광고 의존도 상승하고 있고, 온라인 광고비 지출 등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
 - 포털기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은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기본법과 이들 관련법과의 연계
- (소상공인 기업센터 설립) 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은 의미의 형태(회원 회비로 충당)는 소상공인 어려워 보임 → 국비로 지원 또는 지방비 매칭 형태가 바람직
 - ⇒ 소상공인 협·단체 및 소상공인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 해결하는 방향이 바람직
 - 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각종 회의실 및 연구기능(빅데이터 등) 등의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소상공인연수원’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음

(정부의 소상공인정책에 대한 소고)

- 2017.5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총 6번의 소상공인·자영업 대책 발표하고, 모두 329개의 과제를 제시함
- 현 정부는 6차례의 대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 비용부담 완화, 안정적 영업 환경 조성, 급변하는 경영환경 대응을 통한 자생력 제고에 중점

구분		대책	주요내용	과제(개)
2017	7월, 부처합동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 카드수수료 등 각종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 - 임차환경 조성, 가맹점 보호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76
2018	1월, 부처합동	-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 임대부담 완화, 대규모점포 규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 청탁금지법령 개정, 산재보험 적용 확대, 골목상권 전용화폐 활성화 - 초저금리 대출 마련, 소상공인정책자금 확대 등	19
	7월, 부처합동	-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 소상공인페이 구축, 카드수수료 개편 등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연장, 업종전환·재취업 지원 강화 등	15
	8월, 부처합동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 EITC 지원강화,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제로페이 조기도입 - 소상공인단체에 최저임금위 추천권 부여 등 권익보호 - 권리금 회수보호 강화,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방지 등	37
	12월, 부처합동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 자영업·소상공인 전용상품권(지역사랑, 온누리) 발행, 상권르네상스 추진 - 소공인복지지원센터, 제로페이 시행,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 확대 - 폐업지원센터,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 적용,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124
2019	7월, 부처합동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진출 촉진, 스마트상점 등 스마트화 지원 - 명문소공인 지정, 백년가게 확대 등 성공모델 확산 - 골목상권 전용상품권 확대, 상권 르네상스사업 확대 개편 - 포용적 특례보증, 저신용자 대상 금융지원 확대, 제로페이 확대 등	67

□ 지난 3년간 6차례의 대책 발표와 동시에 제시했던 329개 과제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정책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

-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성과(효과성, 효율성 등)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정책대상인 소상공인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점검할 필요
- 현장의 목소리는 ‘대책만 있을 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없다’라는 푸념

석인 평가에 주목할 필요(체감도 낮음)

- 소상공인을 사회적 약자가 아닌, 우리경제의 주체로써 인정하는 진정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별·첨

소상공인기본법안

김규환의원 대표발의

문재인 정권 전반기
소상공인정책평가
를 위한 정책 토론회

소상공인기본법안 (김규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9. 10. 29.

발 의 자 : 김규환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의 증가, 온라인쇼핑 증가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현재 소상공인 관련 기본법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되어 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법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소상공인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여 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보호 및 성장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 및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보호 및 성장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설치함(안 제9조).
- 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창업, 인력 확보, 직무 능력 향상, 사업장 환경 개선, 판로 확보, 국제화 촉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 라. 정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 영역의 보호,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경영정상화 지원, 폐업 및 재기 지원, 재해·재난 피해 지원, 공제제도의 확립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 마. 정부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혁신 촉진, 명문 소상공인 인증, 조직화 및 협업화, 디지털화, 구조고도화, 상권집적 지역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 바. 소상공인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소상공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소상공인 ombudsman을 둠(안 제3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및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소상공인기본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이 나아갈 방향과 소상공인의 성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보호 및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보호 및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상공인의 날)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단체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보호 및 성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소상공인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7조(소상공인 기본계획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보호 및 성장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소상공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보호 및 성장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8. 소상공인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 보호에 관한 사항
10.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의 폐업 및 재기 지원에 관한 사항
12. 소상공인의 재해·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확립에 관한 사항

14.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15. 명문소상공인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6.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17.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지원에 관한 사항
18.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19. 상권집적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보호 및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소상공인 시행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상공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 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보호 및 성장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보호 및 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소상공인 경영안정, 보호

및 성장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당해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보호 및 성장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소상공인 및 경제·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업무 총괄한다.

⑥ 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⑦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소상공인 실태조사)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보호 및 성장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제11조(창업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직무능력 향상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장 환경 개선) 정부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판로의 확보)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망 구축 등 소상공인 판로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국제화 촉진) 정부는 소상공인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육성, 수출 경쟁력의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소상공인 보호

제17조(사업 영역의 보호) 정부는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에서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정부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경영정상화 지원) 정부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재해·재난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재해·재난 등의 예방,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공제제도의 확립)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 사업 전환, 노령화

등에 따른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조세의 감면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장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

제25조(경영혁신의 촉진)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창의성에 기초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 경영효율성 제고 등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명문소상공인 인증) 정부는 명문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명문소상공인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협업 및 조직화) 정부는 소상공인 사이의 협업사업으로 비용의 절감 및 상호 성장·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업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디지털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전자결제시스템의 도입,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업종별 지원) 정부는 산업의 구조,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방식 등 업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적합한 소상공인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상권집적지역의 지원) 정부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에 대하여 시설, 장비, 시스템, 서비스 등 공동사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2조(소상공인 옴부즈만의 설치) ① 소상공인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소상공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소상공인 옴부즈만을 둔다.

② 소상공인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 소상공인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용기관(이

- 하 “업무기관”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
3.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소상공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소상공인 ombudsman은 소상공인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 ④ 소상공인 ombudsman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소상공인 ombudsman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견청취, 법적 지위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소상공인 ombudsman”으로 본다.
- ⑥ 소상공인 ombudsman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⑦ 소상공인 ombudsman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⑧ 소상공인 ombudsman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⑨ 소상공인 읍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소상공인단체의 결성) ① 소상공인은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소상공인단체는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32조에 따른 소상공인 읍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4조(전문연구기관의 설치) ① 정부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5조(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및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6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4조, 제6조, 제7조, 제14조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⑦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소

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시행계획”이라 한다.

⑧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⑩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조사”로 한다.

⑪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⑫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⑭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⑮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